

# 審 查 報 告 書

##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8. 3. 31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8. 3. 31
- 라. 上程日字 : 1998. 4. 9

## 2. 提案說明要指(提案說明: 産業課長 金戊謙)

### 가. 提案理由

- 서산시 농촌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나. 提案理由

- 상환 의무자가 안제11조 제1항에 의한 상환 기한의 연장이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만료 1월전까지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함(안 제11조).

- 용자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  
정리토록 규정함(안 제14조 제1항)
- 읍.면.동장은 용자사업의 추진실적을 자금상환 만료시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매년 12월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토록 규정함(안 제15조)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

- ◎ 이 조례는 농업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등 농촌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례로써
- ◎ 용자상환금 기한 연장이나 감면등 관리운용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것임.
- ◎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제도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안 제11조에서 상환기간 만료 1월전까지 연장또는  
감면 신청토록 한것은 상환기간만료에 임박하여 어떠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신청기간은 최소한으로 하여 상환 만료 전일까지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 있었음

5. 討 論 : 있었음

6. 少數意見 : 있었음

7.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제안번호	제 189 호
의결년월일	1998. . . (제 회)

##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 운용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8. . ./.

#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 연월일: 1998. .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제안 이유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가.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이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1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함 (안 제11조).

나. 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 관리토록 규정함 (안 제14조 제1항).

다. 읍면동장은 융자사업의 추진실적을 자금 상환 만료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함 (안 제15조).

## 참고 사항

○94년부터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매년 200백만원 ~ 300백만원씩 융자조치하여 현재 128명에 720 백만원이 융자되어 있음

○97년부터 '91년도분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서산시 조례 제 호

###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농촌발전특별회계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이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1월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관리·감독) ①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 정리 한다.

②시장은 융자금을 받은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시 관리·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권리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내지 제16조를 제16조 내지 제17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추진실적보고) 읍·면·동장은 융자사업의 추진실적을 자금 상환 만료 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농촌발전특별회계융자금 대부기간 연장신청서

### 1. 융자금 사업 추진상황

사 업 명	융자일	사업추진실적		진도	음 자 액		
		개 회	실 직		상환액	미상환액	상환잔여액

### 2. 대부기간 연장 계획

가. 대부기간 연장사유

나. 상환방법 및 기간

상기와 같이 대부기간을 연장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관계 증빙서류 1부 끝.

19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신 명 :

(인)

시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농촌발전특별회계용자금원장

차 수 : \_\_\_\_\_ 자금용도 : \_\_\_\_\_ 승인일자 : \_\_\_\_\_  
 주 소 : \_\_\_\_\_ 상환기일 : \_\_\_\_\_ 거치기간 : \_\_\_\_\_ 년거치    권등

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주 소	성 명	인

결 계	세 계 장 파 장		월 일	적 요	용 자 액	회 수 액	용 자 잔 액	비 고

[별지 제3호 서식]

농촌발전특별회계 용자금지원사업 추진실적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용자인	용자액	사업추진실적			비 고 (소득추계)
					개 회	실 직	진도	

## 신 .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 ② (생략) ③ <u>상환의무자가 제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이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4조(감독) <u>시장은 융자금을 받은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권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감독하게 할 수 있다.</u></p> <p>(신설)</p> <p>제5조(준용) (생략)</p> <p>제6조(시행규칙) (생략)</p>	<p>제1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상환의무자가 제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이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1월 전까지 별지 제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4조(관리·감독) ① <u>융자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거 비치 정리한다.</u> ② <u>시장은 융자금을 받은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시 관리·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권리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u></p> <p>제5조(추진실적보고) <u>읍·면·동장은 융자사업의 추진실적을 자금 상환 만료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매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u></p> <p>제6조(준용) (현행 제5조와 같음)</p> <p>제7조(시행규칙) (현행 제6조와 같음)</p>